

제28조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①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.
3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4. 신원 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5.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.
6.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신원인수인의 권리
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2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.
3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.

가. 2. 신원인수인의 권리(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)

- 1)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2)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3)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- 4)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나. 3. 신원인수인의 의무(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)

- 1)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)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: 부당요구 지양부탁
- 3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4)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: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- 5)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,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- 6)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

가) 1)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나) 2)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(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)

다) 3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